



보도	2025.9.18.(목) 조간	배포	2025.9.17.(수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	책임자	팀장	변지영	(02-3145-7471)
		담당자	선임	홍윤태	(02-3145-7472)

자동차보험 특약상품, 소비자 권익 중심으로 더욱 합리화됩니다

- "보장범위는 **더 넓게**", "유용한 특약은 **빠짐없이**", "약관은 **더 명확하게**" -

[주요 내용]

- (개요)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하여 「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①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, ②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③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.
- (개선방향)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, 필요한 특약은 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(선택가능)하는 등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정비합니다.
 - ① (보상기준 합리화) 출고월(月)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「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」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,
 - 보상기준이 국민 실생활에 부합될 수 있도록 日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을 신설합니다.
 - ② (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) 의식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①지정대리청구 특약, ②단독사고(주차장 내 사고 등) 보상 특약 등에 대해
 -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,
 -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 ("디폴트 옵션")하되,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 - ③ (특약문구 정비)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운전자 범위 제한(가족·임직원 등) 등의 특별약관 문구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비합니다.

* 형제·자매 및 부모·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

1. 개요

- (추진배경) 보험소비자가 당초 예상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, 약관 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
 - ①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, ②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③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일부 자동차보험 특약의 개선 추진
- (개선방향)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, 필요한 특약은 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(선택가능)하는 등 현행 車보험 특약의 개선방안 마련

<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개선방안 >

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 제고

보장범위는 더 넓게, 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,
약관상 문구 명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

01 [보장범위는 더 넓게] 보상기준 및 범위 합리화



- ① 「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」 신설
- ② 「기간제 유상운송특약」 신설
- ③ 렌트시 바로 가입 가능한 「렌터카 운전담보 특약」 신설
- ④ 「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」의 보상범위 확대

02 [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] 디폴트옵션 등으로 누락 방지



- ① 중상사고 대비를 위한 「지정대리청구 특약」 자동가입 및 적용범위 확대
- ② 주차장 내 사고, 침수 등의 발생을 대비한 「단독사고 보상 특약」에 대한 안내 강화

03 [약관은 명확하게] 민원 감축을 위한 특약 문구 정비



- ① 「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」의 '가족' 범위 명확화
- ② 「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」의 '임직원' 범위 명확화
- ③ 「주말·휴일 보상 확대 특약」에 대체공휴일 포함

II. 주요 개선내용

1 [보장범위는 더 넓게] 보상기준 및 범위 합리화

[1] 「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」 신설

- (현행)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, 동일 연식 차량에 「연단위 감가율(정률법, 내용연수 15년)」을 동일하게 적용
 - 이로 인해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갱신*하게 됨에 따라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 지속

* 연말 출고 차량이 갱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는 있으나,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가액을 일괄 적용하여 동일연도 연말출고 차량의 보상한도가 적다는 민원 지속 제기

[예시] 출고시점별 차량기준가액

- 현행 차량기준가액이 연식별로 산정됨에 따라, 동일 연식(예시. 24년 출고)인 경우 실제 사용월수가 동일(12개월)함에도 연초 출고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이 더 큼

출고시점별 차량기준가액(신차가액 5,000만원 기준)

(단위 : 만원)

구 분	'24.1.1. 출고차량	'24.12.31. 출고차량
'25년 갱신시 차량기준가액	4,248	3,786
실제사용 월수	12개월	12개월
감가적용 월수	12개월	24개월

- (개선)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(당해연도 1분기 가액)되는 「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*」 신설

* 가입 시, 확대된 차량기준가액에 상응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부과 및 보상한도 확대

[참고]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화면(예시)



[2] 車보험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

- (현행)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부재하여, 일시적(주말 등) 배달 업무 종사자*도 연(年)단위로 가입해야 보상 가능
 - *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하여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'공유 운송서비스' 제공 운전자가 증가중(쿠팡플렉스, 배민커넥트, 디버 등 10만명이 넘는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)
- (개선)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'기간제(日단위) 유상운송특약' 신설

[3]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신설

- (현행) 현재 판매중인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*은 가입 후 익일 0시(자정)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어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 필요
 - *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(렌터카 수리비)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, 차량 대여자가 별도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
- (개선)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,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'익일 0시'에서 '렌트 시점'부터로 변경*
 - * 단, 도덕적 해이(사고 발생 후 가입 등) 방지를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 초과시 익일 0시부터 보장 개시

[4]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 확대

- (현행)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*하는 특약이나,
 - * 본인 차량에 대해 가입한 대인·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게 보상
 - 보험증권상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무관하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제한*
 - * 기명피보험자(배우자) 외의 자가 운전하거나, 동승 부모·자녀 등은 보상 불가
- (개선)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대상과 운전자 범위를 현재 본인 차량의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

<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개선내용 >

구분	현행	개선
보상대상	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	당초 본인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와 동일 (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, 부모, 자녀)
운전자 범위	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	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내의 자

2

[유용한 특약은 빠짐없이] 디폴트옵션 등으로 가입 누락 방지

- (현행)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 다수 존재
 - ① (지정대리청구 특약)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(의식불명 등)에 대비하여 대리인*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로,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매우 저조(0.01%)한 실정
 - *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,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선택 가능
 - 또한, 적용범위가 자동차상해 등 일부 특약으로 제한되어 있어, 별도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다양한 특약(간병비 지급 특약 등)에는 적용 불가
 - ② (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) 주차장 내 사고,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나,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사례 반복
- (개선)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,
 -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 (“디폴트 옵션”)하되,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
 - 또한, 진단금·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확대

3

[안내는 명확하게] 민원 감축을 위한 특약 문구 정비

- (현행)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하여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
 - ① (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) 특약상 ‘가족’의 범위에 형제·자매 및 자녀·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나,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·며느리·사위로 기재되어 관련 민원·분쟁이 빈번*
 - * 가족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: (‘22년) 228건, (‘23년) 251건, (‘24년) 228건
 - ② (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)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만 포함됨에도, 소규모 법인 등이 이를 오인*하는 경우가 다수
 - *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: (‘22년) 35건, (‘23년) 29건, (‘24년) 55건

③ **(주말·휴일 보상확대 특약)** 주말·휴일에 사고 발생시 보상이 확대되는 특약이나, 대체공휴일이 '공휴일에 관한 법률'상 공휴일과 별도로 정의되고 있어 동 특약 적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오해 다수*

* 실제로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보상 중

□ (개선)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, 다이렉트 채널(CM)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

< 특약문구 개선내용 >

구분	내용
①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행) 피보험자의 배우자·부모·자녀·사위·며느리 ▶ (개선) 피보험자의 배우자·부모·자녀·사위·며느리 (단, 부모·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외)
② 임직원 운전자 특약(개인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행)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, 계약관계에 있는 자 ▶ (개선)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, 계약관계에 있는 자
③ 주말·휴일 보상확대 특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현행) 주말 및 법정공휴일(근로자의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) ▶ (개선) 주말 및 법정공휴일(근로자의날 및 임시·대체공휴일 포함)

[참고]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안내 예시

①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선택시 Pop-up 메시지



Q.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위·며느리도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 따른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나요?

A. **자녀·부모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상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**

- 자녀·부모의 사실혼 배우자 :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요
- 형제·자매 :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요

②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선택시 Pop-up 메시지



Q.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을 가입한 경우 제 차량을 제가 대표인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사고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
A. **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소속 임직원이 보상되지 않습니다.**

-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은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임직원(공동사업자 대표 포함)만 보상 가능

III. 향후 계획

- '25.4분기 中 신규 특약상품 신고·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,
- 별도 신고·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

< 향후 추진일정 >

구 분	과제명	적용시점
① 특약 보상기준 및 범위 합리화	①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특약 신설	'25.4분기
	②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	
	③ 렌트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신설	
	④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범위 합리화	
② 디폴트옵션 등으로 빠짐없이 보상	① 지정대리청구 특약 자동가입 및 적용범위 확대	
	②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안내절차 강화	
③ 특약 문구 정비	①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상 '가족' 범위 명확화	즉시
	②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상 '임직원' 범위 명확화	
	③ 주말·휴일 보상확대 특약상 대체공휴일 포함	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